h·well 국민건강보험

복지용구 대여계약 건 청구 유의사항 (재안내)
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10호(2016.11.16.)「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**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내구연한**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○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전산에 등록된 계약 중 **대여종료일이 내구연한 만료일을 초과한 경우, 7월 급여제공분 청구명세서 생성이 불가**합니다.

※ 내구연한만료일이 경과하여 **연장대여 계약**으로 변경된 건은 **정상청구 가능**

<7월 급여제공분 청구명세서 생성이 불가한 대여계약 예시>

대여시작일	대여종료일	내구연한만료일	조치사항
2017-05-01	2017-09-30	2017-03-05	내구연한이내 수가 적용불가 ※ 필요 시 수급자 동의서 징구 후 연장대여계약
2017-05-01	2017-08-15	2017-07-05	대여종료일을 2017-07-05로 수정
2017-05-01	2017-10-25	2017-10-05	대여종료일을 2017-10-05로 수정

※ 내구연한 관련 전산 매뉴얼 : 장기요양정보시스템/복지용구 계약/복지용구 공지사항

※ 내구연한과 별도로 7월1일 급여비용 고시개정에 따라 월 대여료가 인상된 제품의 계약은 대여종료일을 6월30일로 수정 후, 7월1일을 시작으로 인상된 수가를 적용해야함

○ 따라서, 위와 같은 경우 기존 계약의 **대여종료일을 내구연한만료일자로 수정**하고 경우에 따라 **추후 수급자의 연장대여 동의서 징구 후 연장대여 기간에 맞는 월 대여료를 적용**하여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다만, 기존에 안내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17호(2017.6.30.)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관련, **204개 대여제품의 월 대여료가 변경**됨에 따라,

○ 월 대여료가 인상된 제품의 계약을 수정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, **청구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**하게 되어 **급여비용 지급이 불가**하므로 반드시 계약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 … 심사불능 또는 청구서 반송처리

h·well 국민건강보험